단체실 운영 규칙

제1장 총칙

- 제1조 (목적) 본 규칙의 목적은 특정 단체가 장영신 학생회관(이하 '신학생회관'이라 한다) 내 특정 공간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'배정' 및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.
- 제2조 (단체실) 단체실이란, 신학생회관에서 배정의 대상이 되는 공간을 말한다. 기본적으로는 아래 각 호를 의미한다.
 - 1. 신학생회관 2 층 단체실(201 호, 202 호, 203 호, 204 호, 205 호, 206 호) 총 6 실(이하 '2 층 단체실'이라 한다).
 - 2. 신학생회관 3 층 자치단체사무실(301 호, 302 호, 303 호, 304 호, 305 호, 306 호, 309 호) 총 7 실(이하 '학생자치단체실'이라 한다).
- 제3조 (배정 대상 제외) 다음과 같은 공간은 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- 1. 본회에서 지정한 창고
 - 2. '장영신 학생회관 운영준칙'에서 논의된 상담 센터와 상업 공간
 - 3. 안전상의 문제로 본회가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
 - 4. 기타 본회가 제외하는 공간
- 제4조 (단체실 배정) 본회는 단체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단체실 배정을 진행한다. 본회가 진행하는 단체실 배정은 정기 단체실 배정과 임시 단체실 배정이 있다.
- 제5조 (단체실 배정의 대상) 단체실 배정의 대상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5 조에 명시된 자치단체임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6조 (단체실 회수) 본회는 단체실을 사용 중인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단체실을 회수할 수 있다.

- 1. 단체실을 배정받은 단체가 본회가 진행하는 안전점검에서 2회 이상 경고를 수령한 경우
- 2. 배정한 단체실에서 화재 및 기타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 단체실 사용이 불가한 경우
- 3. 단체가 제명 혹은 활동이 중단되거나, 활동 인원이 없는 경우
- 4. 특별기구에 한하여,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인준에 실패할 경우.
- 5. 기타 본회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단체실 회수를 의결할 경우
- 제7조 (단체실 포기) 단체실을 배정받은 단체는 언제든지 배정받은 단체실을 포기할수 있다. 단체실 포기의 취소는 불가능하며, 이후 정기 및 임시 단체실 배정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.
- 제8조 (단체실배정소위원회) 단체실 배정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단체실배정소위원회(이하 '배정위'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2장 정기 단체실 배정

- 제9조 (정기 단체실 배정) 정기 단체실 배정이란 본회가 매년 봄학기에 시행하는 단체실 배정이다.
- 제10조 (배정 범위) 정기 단체실 배정에서 대상이 되는 공간은 2층 단체실과 학생자치단체실이다.
- 제11조 (배정 기준안) 배정 기준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 - 1. 배정의 대상이 되는 공간
 - 2. 배정 대상 단체
 - 3. 배정 기준
 - 4. 배정 신청 서류
 - 5. 배정 심사 일정

제12조 (학생자치단체실의 배정)

- ① 학생자치단체실 총 7실 중 KAIST 학부 총학생회에게 2실, 학부 동아리연합회, 새내기학생회, 학생복지위원회, 행사준비위원회,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게 각 1실을 배정한다.
- ② 단체실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'학생자치단체실 사용 확인서'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한다.

제13조 (2층 단체실의 배정) 2층 단체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.

- 1.2층 단체실 총 6실 중 중앙운영위원회에 1실을 배정한다. 배정 절차는 심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2층 단체실 배정 절차를 따른다.
- 2.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에게 배정 후 남은 공간은 학부 동아리연합회에게 배정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매년 봄학기에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방 재배치 시기와 맞추어 2층 단체실의 재배정을 시행한다.
- 4. 재배정 시행 시 학부 동아리연합회에게 넘겨준 배정 권한을 회수하여 해당 실을 단체실 재배정에 포함시킨다.
- 5. 본회는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90일 내에 재배정 기준안을 공고한다.
- 6. 본회는 재배정 기준안 공고 후 14일 동안 재배정 기준안에 따른 신청 서류를 받는다.
- 7. 본회는 신청 서류 마감 후 7일 내에 심사 후 재배정 결과를 공고하고,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4조 (심사) 자세한 심사 방식은 배정위에서 결정한다.

제3장 임시 단체실 배정

- 제15조 (임시 단체실 배정)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회는 임시 단체실 배정을 진행할 수 있다.
 - 1. 기존에 단체실을 배정받은 단체의 단체실 회수 혹은 포기로 배정 대상 공간이 발생한 경우
 - 2. 기타 본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

제16조 (배정 범위) 임시 단체실 배정에서 대상이 되는 공간은 배정위가 결정한다.

제17조 (배정 기준안) 배정 기준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
- 1. 배정의 대상이 되는 공간
- 2. 배정 대상 단체
- 3. 배정 기준
- 4. 배정 신청 서류
- 5. 배정 심사 일정
- 제18조 (학생자치단체실의 배정) 배정 대상 공간이 학생자치단체실인 경우 본회 전체회의의 판단을 거쳐 배정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.
- 제19조 (2층 단체실의 배정) 배정 대상 공간이 2층 단체실의 경우 본 규칙 제 13 조를 준용한다.

제20조 (심사 및 일정) 자세한 심사 방식 및 일정은 배정위에서 결정한다.

제4장 단체실배정소위원회

제21조 (위원의 구성)

- ① 배정위는 본회 활동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배정위는 본회 전체회의에서 구성한다.

제22조 (위원 제한)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정위 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본회 이외에, 배정위 위원 모집 현재 신학생회관 내에서 단체실을 배정받은 단체의 일원인 위원
- 2. 제명되거나 활동이 정지된 활동위원

제23조 (업무) 배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배정 기준안 제작
- 2. 배정 심사 실무
- 3. 기타 단체실 배정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

제24조 (배정위의 해체) 단체실 배정 업무가 종료되면 배정위는 자동으로 해체한다.

제5장 점검 및 징계

제25조 (점검)

- ① 본회는 배정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의 점검을 실시한다.
- ② 점검에서는 본 규칙에서 규정하는 물품 혹은 상황을 적발할 수 있으며, 경고, 주의 혹은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부과 된 주의나 경고는 다음 단체실 재배정시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.

제26조(징계 간 상관관계)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.

제27조 (징계의 부여)

- ① 적발 대상의 위반 여부는 적발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때 유효하다.
- ②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경우, 그 책임은 해당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동아리에 있다. 단, 사용 단체 이외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, 책임은 해당 소재로 한다.
- ③ 한 회의 정기 안전점검에서 동일한 적발 대상 항목을 중복 위반한 경우, 주의 혹은 유예를 누적하여 부과하지 않는다.
- ④ 적발 대상의 위반에 대한 주의 부과 및 소명에 의한 철회는 개별적으로 적용한다.
- 제28조 (점검의 통보) 점검 결과는 단체실의 문 앞에 부착하고, 단체실의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점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.

제29조 (화재안전 상의 징계 부과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.
 - 1. 단체실에 단체실 구성원 부재 시, 전열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. 단,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는 제외한다.
 - 2. 전원의 플러그가 완전하게 꽂혀있지 않은 경우
 - 3. 번개탄, 라이터, 성냥, 기름 등의 발화 목적의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. 단, 단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징계를 철회할 수 있다.

- 4. 단체실 문 앞에 보안 및 화재 안전관리책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, 스티커에 부착된 정보가 본회가 가진 정보와 상이한 경우
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.
 - 1. 단체실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, 전열기가 작동 중인 경우.
 - 2.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
 - 3. 단체실 내에 부탄가스를 비롯한 인화성 연료 등의 화재위험물질이 위치한 경우. 단, 단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징계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경고 1회를 부과한다.
 - 1. 단체실 내에 사용된 담배, 담뱃재 등의 흡연 흔적이 발견된 경우.
 - 2. 단체실 내에서 버너 사용 흔적이 적발된 경우. 단, 연료와 연결되지 않은 버너의 보관은 허용한다.
- ④ 단체실 내에서 단체 회원의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흔적이 있는 경우 경고 2회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매월 진행하는 점검과 관계없이 적발할 수 있다.

제30조 (위생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. 단,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.
 - 1.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이 발견되는 경우
 - 2. 균류나 해충의 서식 혹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
 - 3. 동물의 사육이 발견된 경우
- ② 단체실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단체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, 최대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. 단,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.

제31조 (주류의 보관과 음주 상의 주의 부과)

① 냉장고 혹은 캐비닛 내부에 보관이 되어있지 않거나, 구매 당시의 포장 상태로 보관이 되어있지 않고 방치된 주류가 발견된 경우 주의 1회

부과를 유예한다. 단,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한다.

② 다량의 빈 병이나 토사물 등으로 단체실 내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흔적이 발견된 경우 최대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. 단, 연속적으로 적발될 시 직전 유예한 주의 횟수와 합산하여 부과 한다.

제32조 (안전점검 집행 상의 주의 부과)

-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단체실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.
 - 1. 출입 수단의 부재
 - 2. 출입 수단이 존재하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
 - 3. 출입구가 파손 혹은 봉쇄된 경우
 - 4. 출입구 앞에 과도하게 장애물이 적치되어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
 - 5. 단체실 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본회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
- ② 단체실에 재실 중인 단체 회원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진행중인 본회 위원의 진입을 방해한 경우, 본회 위원의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 4회를 부과한다.

제33조 (권고사항) 다음 각 호의 경우 권고를 발송한다.

- ① 소화기가 고장나거나 소실된 경우
- ② 출입구 및 복도 앞에 과도하게 장애물이 적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본 규칙의 개정 후 첫 정기 점검에서 신설 혹은 변경된 조항에 적발된 경우
- ④ 기타 단체실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단체의 주의 혹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 동아리에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내용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구 권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해당 단체에 있다.
- 제34조 (점검의 예외) 학부 동아리연합회에 배정 권한을 넘겨준 2층 단체실은 학부 동아리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.
- 제35조 (징계의 유효 기간) 징계는 매 정기 단체실 배정 이후 초기화된다.

제6장 개정

제36조 (개정) 본 세칙의 개정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.